

2026년도 제2회 업무직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

2026년도 제2회 업무직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응시를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5일
화성도시공사사장

1 채용분야 및 인원

구분	직종	업무분야	모집인원	임기	연봉(만원)	시험방법	근무예정지
총계			15명		2026년 기준, 제수당 별도		
공개경쟁	업무직	식당조리원	1명	무기계약(정년 만60세) ※ 3개월 수습	약 3,279	서류전형 인·적성전형 면접전형	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내
		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원	10명	7) 근로계약형태 및 계약기간 참조	약 3,236	서류전형 필기전형(NCS) 인·적성전형 면접전형(실기포함)	
		사무보조 (안내데스크)	3명	무기계약(정년 만60세) ※ 3개월 수습	약 3,236	서류전형 필기전형(NCS) 인·적성전형 면접전형	
제한경쟁	사무보조 (안내데스크)	1명					

- 1) 근무지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업무분야에 따라 임용 후 순환보직 할 수 있음
- 2)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업무능력과 근무수행태도를 고려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3) 식당조리원 : 구내식당의 식당운영(조리, 위생관리 등) ※ 구내식당 근무 시, 위험수당, 위생수당 별도지급
- 4) 사무보조(안내데스크) : 사무업무 보조(안내데스크) 등 업무 수행하며 체육센터, 장사시설 등 근무
- 5)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원 :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운전업무(교통약자 승하차지원, 차량운행 등)
- 6) 업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제수당(시간외근무, 휴일근무, 야간근무 수당), 자격수당 등 별도 지급하며,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른 규정 변경 및 연봉 수준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
- 7) 근로계약형태 및 계약기간

식당조리원, 사무보조	무기계약(정년 만60세)
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원	1년 기간제 근로계약 , 향후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

2 시험의 방법

가. 응시분야별 전형

○ 식당조리원

서류적격심사



인·적성 전형



면접심사
+ 서류평가



최종합격
서류50%+면접50%

○ 사무보조(안내데스크,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원)

서류적격
심사



필기전형
NCS



인·적성
전형



면접심사



최종합격
필기70%+면접30%

나. 서류전형 [식당조리원 경우 서류평가 진행]

- 채용분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격·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
-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(공란 및 동일기호 반복 등), 필수자격 미소지(증빙자료 미첨부) 등 불합격 처리
- 식당조리원의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
(평가항목 :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증, 대회수상 경력, 포상내역, 취약계층 여부 등)

다. 필기시험(NCS) [사무보조,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원만 해당]

- 응시자격 적격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
- 일반교양정도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검정하며, 60점 미만자 불합격
- 문제해결능력,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원관리능력 평가
-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합격

라. 인·적성검사

-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
- 인성, 직무능력, 직무적성 등을 측정하며, 신뢰도, 허구성, 인성점수, 적성점수 등에서 부적격 판정 시 과락 판정

마. 면접전형

-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, 용모·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기타 발전가능성 평가
-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“보통(70점)” 이상인자 선발
-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“미흡” 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
-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원의 경우, 실기 평가 실시(60점 이상인 자 선발)

바. 최종합격자 결정

- 식당조리원

서류심사 50% + 면접전형 50%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

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- 사무보조(안내데스크,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원)

필기시험(NCS) 70% + 면접전형 30%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,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- 예비합격자는 업무분야별 최대 3명까지 선정 가능하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

-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근거한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항 및 결격사유 미보유시 최종합격자 확정

3 응시자격

가. 응시연령 :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공사 정년(만60세) 범위 이내

나. 거 주 지 : 제한 없음

다. 결격사유

결격사유	
공통 사항	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.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공통 사항	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기타 사항	- 전 직장에서 재직 중 직무태만, 소행불량, 상사 명령 불복종,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파면, 해임, 직권 면직, 계약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- 공사 재직 중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일이 있는 자

라. 업무직 업무분야별 상세자격요건

구분	업무분야	필수자격요건
공개경쟁	식당조리원	(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) 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※ 인정자격증(인정자격증 외 인정 불가) * 기 능 장 : 조리기능장 * 산업기사 : 한식조리, 중식조리, 양식조리, 일식조리, 복어조리 * 기 능 사 : 한식조리, 중식조리, 양식조리, 일식조리, 복어조리 ■ 「식품위생법」제40조에 의한 건강진단 적격자 (구 보건증) ※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■ 조기출근 가능자(07시 ~ 08시) 및 근면성실한 자
	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원	(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) ■ 집단급식시설 경력자 (※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제출) ※ 업무분야 및 주당 근로시간 미기재시 서류전형 점수 산정 불가 ■ 조리 관련 교육 이수자(이수증 제출) ■ 관련분야 포상 수상자 ※ 공공기관장 표창 이상(상장 제외) ■ 장애인, 취업지원·보호 대상자, 취약계층, 북한민
	사무보조 (안내데스크)	(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) ■ OA자격증 소지자 또는 안내데스크 경력 1년이상 경력자(공고일 기준) ※. OA 자격증 :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,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ITQ, MOS,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■ 주말근무,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며 근면성실한 자
장애인 제한경쟁	사무보조 (안내데스크)	(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) ■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 - 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하며,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■ OA자격증 소지자 또는 안내데스크 경력 1년이상 경력자(공고일 기준) ※. OA 자격증 :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,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ITQ, MOS,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■ 주말근무,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며 근면성실한 자

마. 필수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

- 필수자격요건의 자격증, 면허증 등 증빙서류는 **공고일 현재 소지자**에 한하며 증명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. (*. 취득시험 합격증, 취득예정자 등 제외)
- 경력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, 제출된 증명서류에 의하여 심사합니다.

-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인정하며,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인정합니다.

-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건만 유효하며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.

※ 서류전형 심사 시 업무분야 및 주당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점수 산정 불가

바.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
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기관 연락처 및 발급자 성명 반드시 기재

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

가. 접수기간 : 2026. 8. 25.(화) 10:00 ~ 2026. 9. 14.(월) 17:00 까지

나. 접수방법 : 화성도시공사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(※ 우편, 방문접수 불가)

- 온라인 채용접수 URL : <https://hu.recruiter.co.kr>

다. 시험일정 :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,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함

구분		식당조리원	사무보조,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원
원서접수		2026. 8. 25. ~ 2026. 9. 14.	
적격심사	심사	2026. 9. 15. ~ 9. 16.	
	적격자 발표	2026. 9. 17.	
필기전형 (NCS)	필기(NCS) 전형	<해당없음>	2026. 9. 19.
	합격자 발표	<해당없음>	2026. 9. 23.
인적성전형	인·적성 전형	2026. 10. 3.	
	합격자 발표	2026. 10. 8.	
면접전형		2026. 10. 15.	
최종합격자 발표		2026. 10. 23.	
임용예정		2026. 11. 중 ※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(최대 1년)	

※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함

라.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,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.

- 직렬(분야)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 시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고

모두 무효 처리됩니다. 또한,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 됩니다.

- 경력 및 학위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, 제출된 증명서에 의하여 심사됩니다.
- 필수자격요건 자격 증빙서류(자격증, 면허 등)는 반드시 첨부에 의하며, 서류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5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응시원서(사진첨부),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	원서접수 시 전산기재
2	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	채용접수 사이트 동의
3	경력증명서(영문인 경우 한글번역 첨부) 또는 재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※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건만 인정 -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인정 불가 ※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근무기간과 일치하여야 함. ※ 근무처, 직위(직급) 및 세부담당 업무, 발급기관의 연락처 및 발급자 성명 반드시 포함 ※ 경력증명서상 주당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업무분야 및 주당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 시 경력점수 산정 불가	스캔 파일 업로드
4	경력증명서 해당기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(공고일 이후 발급) ※ [제출서류 3]을 제출한 경우 필수 제출 사항임	스캔 파일 업로드
5	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필수자격요건 증빙서류 모두 포함)	스캔 파일 업로드
6	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(구 보건증) ※ 식당조리원에 한하며 원서 접수 시 필수 제출	스캔 파일 업로드
7	장애인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* 제한경쟁 지원자 필수 제출	스캔 파일 업로드
8	조리관련 교육 이수증(식당조리원 응시자에 한함, 해당하는 경우 제출)	스캔 파일 업로드
9	포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스캔 파일 업로드
10	대외수상 경력(해당자에 한함)	스캔 파일 업로드
11	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※ 제출처를 '화성도시공사'로 명시하여 제출	스캔 파일 업로드
12	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1365포털 또는 VMS포털에서 발급, 스캔 파일 업로드
13	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(붙임1 양식, 해당자만 제출) ※ 미제출하는 경우 편의사항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	스캔 파일 업로드

※ 필수 자격요건에 따라 [제출서류3] 경력증명서(또는 재직증명서)를 제출하는 경우 [제출서류4]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, 두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누락 될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는 출생년도(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: [예시] **0708-*****)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(또는 삭제) 처리된 것으로 제출

6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

-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접수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가 없으며, 접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부 파기됩니다.

7 가산특전

가.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

-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(30%) 이내 적용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 5% 또는 10%씩 가산
-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, 각 전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합격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)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	매과목 4할 이상 일 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각각5% 10%씩 가산	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

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

※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
나. 우수자원봉사자 가점

-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차등 부여

구 분	금장	은장	동장	해바라기	기타
자격기준	기간3년이상이며 누적 300시간 이상	기간3년이상이며 누적 200시간 이상	기간3년이상이며 누적 100시간 이상	기간3년이상이며 누적 30시간 이상	이하
배 점	5	4	3	2	1

8 기타사항

- 가.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, 출생년도 (출생월일은 반드시
명기 : [예시] **0708 -*****), 학교명,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
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* 단,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

* 출생월일을 가리는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출생월일 삭제 금지

- 나.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.

- 다.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라. 응시원서상의 각종 기재착오, 누락, 자격미달 응시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마.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.
- 바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사.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아.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입사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자.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후에도 불합격처리, 채용시 자격제한,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차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1조(임원의 겸직 제한)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합니다.
- 카. 채용관련 비리, 부정행위,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,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(합격자 발표일 포함)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, 이메일 (gavin0206@hu.or.kr)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.
- 타.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[붙임1]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 및 편의 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미제출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)
- 파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인사교육부(031-8012-777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1]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

○ 편의지원 항목

장애유형 및 등급			편의지원 항목
지체 장애	상지	공 통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공통편의지원, 답안지 대필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공통 편의지원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	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뇌병변 장애	공 통	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	장애정도가 심한 자		공통 편의지원, 답안지 대필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공통 편의지원
시각 장애	공 통	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	장애정도가 심한 자		공통 편의지원,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공통 편의지원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		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	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	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	과민성대장증후군, 과민성방광증후군, 신장, 심장, 장루, 요루 장애 등		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기타	임산부		시험 중 화장실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 (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)

○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

구 분	주 요 내 용
대 상	·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·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기간 및 방법	· 기 간 － 편의지원 신청 :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－ 관련서류 제출 :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· 방 법 －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,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 (채용홈페이지 첨부파일 제출, 미제출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) － 증빙서류(의사 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인 증명서 등)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(등록)
유의사항	·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· 의사진단(소견)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※ 단,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· 의사진단(소견)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. · 임산부의 경우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(예시) 상기인은 임신 ()주, 필기시험 예정일(0000.00.00)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,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·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· 확대문제지 등 : 확대문제지(118%, 150%), 축소문제지(82%), 확대답안지 (118%, 150%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) ·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,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_입사지원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지원직종		업무직	시험구분	☐ 필기전형 ☐ 인적성전형
지원업무분야			출생월일	
성 명			전화번호 (보호자는 필요시 기재)	응시자 : 보호자 :
주 소		□□□□□		
구 분		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☐ 임신부 ☐ 기타 일시적 장애 등 <상세기술>		
첨부서류		☐ 장애인등록증 ☐ 장애인복지카드 ☐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☐ 의사 진단(소견)서		
편의 제공 요청 사항	문 제 지 (택1)	☐ 해당 없음 ☐ 확대문제지 (☐ 118% ☐ 150%) ☐ 축소문제지 (☐ 82%)		
	답 안 지 (택1)	☐ 해당 없음 ☐ 대필 ☐ 확대답안지 (☐ 118% ☐ 150%) ☐ 아라비아 숫자 표기		
	시 험 실	☐ 해당 없음 ☐ 별도 시험실		
	장애인 보조기구 (본인지참)	☐ 해당 없음 ☐ 보조기구 명칭() ☐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(☐ 해당 없음 ☐ 필요사항 :)		
	기 타	☐ 해당 없음 ☐ 화장실 허용 ☐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☐ 인성검사 시 필요사항 () ☐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		
※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
화성도시공사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 20 . . . 성명(대리인) (서명 또는 날인)				
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				